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성주참외를 테마로 휴양, 교육 및 체험기반시설 재조성에 따른 공원 운영 및 관리 기본사항을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지역주민과 도시민에게 농촌여가 및 체험,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농교류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칭 변경 :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성주참외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나. 공원의 목적, 기능에 관한 사항
- 다. 공원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공원 대관 및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2022. 10. 25. ~ 2022. 11. 15.(21일간)
 - 2) 규제심사 : 심사 대상 아님[미래지역활력과-906(2022. 02. 17.)]
 -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사항 없음[가족지원과-7728(2022. 02. 17.)]
 - 4) 비용추계서 : 별도 필요 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주참외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외재배지의 역사적 가치와 성주 참외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조성한 성주참외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성주참외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479 일원에 둔다.

제2장 운영 및 관리

제3조(업무) 공원에서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원 내 전시 및 시설관리
2. 참외와 관련한 전시물의 발굴·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3. 공원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공원을 방문한 사람(이하 “방문객”이라 한다)에 대한 체험
·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5. 농촌 체험 및 농산물 홍보 등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행사
6. 그 밖에 농촌 활성화 및 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1. 정기 휴관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당일,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2. 시설 보수 및 점검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3. 그 밖에 군수가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2호,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사전 관련 내용을 성주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관람시간) ① 공원의 관람시간은 10:00 ~ 17:00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 ① 공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또는 체험비 등은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수익금 처리) 공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8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공원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실내시설 입장이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방문객은 공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흡연, 노숙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공원 내 실내시설에서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4. 고성방가, 질주, 소란 등으로 다른 사람들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관람하는 등 타인에게 보건, 위생 등에 피해를 주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공공질서 문란 및 다른 관람객의 건전한 관람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관람객이 시설과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실비변상 하여야 한다.

제11조(전시품의 수집) ① 군수는 참외와 관련한 각종자료 및 전시 가치가 높은 전시품을 수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원에 전시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 예는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전시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제3장 대관 및 편의시설

제12조(대관신청 및 허가) ① 군수는 공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원 시설 중 참외테마광장에 대한 대관(이하 “대관 시설”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공원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 희망 전일까지 시설 운영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3조(대관시설 사용시간) ① 대관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개관일 및 관람시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자의 승인을 얻어 대관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대관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2회 이상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경우
2.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사용목적이 공원의 건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공원의 유지·관리상 대관허가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대관료) ① 공원의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16조(대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공익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공원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8조(편의시설 등) ① 군수는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매점, 카페테리아, 음료자판기
2. 기념품 판매점
3. 모성보호실(모유수유, 착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성주참외공원 운영 및 관리 기본사항을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지역주민과 도시민에게 농촌여가 및 체험,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농교류 증진을 위하여 선언적 형식으로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신소득작물담당 이 태 일